

海岸保全地區의 維持管理

주 ①

겸용 공작물 관리협정서(예)
(도로관리자 간)

해안법(昭和 31년 법률제 101호) 제15조 및 도로법(昭和 27년 법률제 180호)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안관리자 ○○○현지사(또는 ○○시정 촌장) ○○○○(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로관리자의 장 ○○○현지사(또는 ○○시정 촌장) ○○○○(이하 「을」이라 한다.), ○○어항해안 보전구역내의 호안 일부와 겸용 한다. 현 도로(또는 시정촌 도로) (이하 도로라 한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을 인정, 본 협정을 체결한다.

(겸용구역)

제1조 이 협정에 의해 관리

하는 겸용구역은 ○○시, 군 ○○정대자 ○○·○○번지 및 ○○·○○번지에 인접한 도로 지선구역(호안 ○○메-토루구역) 첨부도면(상세도)과 같이 한다.

(관리책임)

제2조 겸용구역 내의 호안 중 도로로 겸용하는 부분(물 두드림 공 ○○○, 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함)의 관리는 「을」로 하고 다른 부분은 「갑」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유지수선)

제3조 제2조에 정한 「을」의 관리에 속하는 것은 유지 수선은 「을」의 책임으로, 기타의 부분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2. 겸용한 것이 원인이 되

어 「갑」의 관리에 속하는 부분에 손상을 미치는 경우는 「을」의 책임이다.

(공사의 상호협의)

제4조 겸용지구내에 있어서 「갑」이 해안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사계산서,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겸용지구내에 있어서 「을」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사설계서,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상시의 노면보수, 범면수입, 기타 경이한 사항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5조 「갑」은 호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제4

**제4조 겸용지구내에 있어서
「갑」이 해안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공사계산서,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제1항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량의 제한, 통행의 금지, 또한 제한에 있어서 「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빨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비용부담)

제6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2조에 정한 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겸용공작물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제3조에서 정한 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갑」이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 또는 「을」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필요하게 된 해안공사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관계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해 복구사업비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은 각각 관리구분에 대응할 복구사업비에 대하여 부담한다.

(재해복구)
제7조 겸용공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취급하는 것은 제2조에 준하여 행한다. 주로 재해가 도로에 관한 것일 경우는 「을」이 주된 재해가 해안에 관한 것일 경우는 「갑」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 사업비 국고부담법(昭和 26년 법률 제9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의 재해복구사업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출원 행위의 취급)

제8조 겸용구역에 있어서

제3자의 고용, 공작물 설치, 기타 공사 또는 행위의 제한 허가는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의 점용구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점용료 등의 징수)

제9조 제8조의 허가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해안법의 규정에 의해서 「갑」이 징수하며, 「을」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협정의 변경 등)

제10조 「을」이 협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의 변경, 질의가 있을 때는 겸용공작물의 주지에 따라 필요한 것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